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32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곽규택 · 조승환 · 박지원
김용태 · 유상범 · 신성범
김상훈 · 강대식 · 강승규
배준영 · 조지연 · 강명구
서천호 · 최은석 · 서범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속화된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복지인프라와 지방재정의 한계로 충분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第47條(費用의 보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老人福祉施設의 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u>	<u>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다.</u>